## **어의장학금 지원기준** (제6조 관련)

구분	선 정 기 준	지원내역
성적기준 (공통)	<ul> <li>▷ 신입생·편입생</li> <li>-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</li> <li>▷ 재학생</li> <li>-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, 평점평균 2.75이상</li> </ul>	
소득기준	<ul> <li>▶ A등급</li> <li>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)</li> <li>기초~소특 5구간(학자금지원구간, 구 소득분위) 이하 (한국장학제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)</li> <li>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</li> <li>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제의 3급 이상 장애인)</li> <li>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&lt;2019.6.4&gt; 전 장애등급제 상의 3급 이상 장애인과 동일</li> </ul>	수업료 전액
	▷ B등급 - 소득 6구간~8구간(학자금지원구간, 구 소득분위) 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)	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(예산범위 내에서 지급)

- 1) 장학금액은 신청인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2) 어의장학금 신청인원에 따라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
- 1순위: 소득구간(구 소득분위)가 낮은 학생
- 2순위: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
- 3순위: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
- 3) A등급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통 기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(학자금지원구간) 학생을 제외하고, 차상위계층~5구간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수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의 50%만 면제함